#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• 이학영 •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선국의 경우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,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전파자 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0조제1항제4호). 법률 제 호

##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제4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  - ②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  - ③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  - ④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 국 무선설비를 양수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
⑤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2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)	제20조(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	
할 수 없다. 다만, 제19조제2항,	
제1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	
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	
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	4
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	
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	
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<u>2년</u>	<u>3년</u>
이 지나지 아니한 자	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